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39호 2022. 8. 1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18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119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7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0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9.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295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18-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295	20220809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412-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1길 38	20220809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 명칭사용 (맹방해변로분기)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18-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295	20220809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412-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1길 38	20220809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맹방해변로분기)	

삼척시 고시 제2022 - 11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2.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36-22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5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36-22	20220812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위치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72	20220812	신규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덕산해변길분기)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6-23	폐 지	20220812	건물멸실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3-5	폐 지	202208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 (미로,노곡,근덕) 연결구간시 종점지역명칭활용 (미로,근덕)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1길 24	폐 지	20220812	건물멸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명칭사용 (맹방해변로분기)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부여 2건, 폐지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5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36-22	20220812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위치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72	20220812	신규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덕산해변길분기)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6-23		20220812	건물멸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 활용	주택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3-5		202208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근덕)	주택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1길 24		20220812	건물멸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맹방해변로분기)	주택

삼척시 고시 제2022 - 119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2.

삼 척 시 장

○ 고 시 일 : 2022. 8. 12. (금)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 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서면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변경 전 (기존)	문의재로	로	근덕면	동막리 산 299-2	동막리 산 303-1	155	3	5	3235-1→ 3235-62	도로구간 종점연장
	변경 후	문의재로	로	근덕면	동막리 산 299-2	동막리 산 299-1	250	3	20	3235-1→ 3235-26	

위치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공고 제2022-87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2. 8. 8. ~ 2022. 8.22.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2. 8.23.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영○
	주 소 (대장상주소)	하거노1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21-6 1층 17.85㎡ 주택(목조/와가)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8.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